

아동기본법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33
----------	-------

발의연월일 : 2023. 4. 28.

발 의 자 : 양금희 · 김기현 · 박대출
송언석 · 신원식 · 김도읍
박성중 · 이양수 · 김영식
송석준 · 김미애 · 강기윤
서정숙 · 최영희 · 조명희
최재형 · 이종성 · 조은희
유경준 · 안병길 · 윤두현
정우택 · 박성민 · 지성호
배준영 · 윤창현 · 서병수
구자근 · 성일종 · 황보승희
의원(30인)

제안이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고 함.

주요내용

- 가.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다.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2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3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명, 차별금지, 의사표현, 교육, 보호, 건강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
-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아동의 권리침해 사항을 발굴하거나 접수 받아 조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ombudsman을 위촉함(안 제24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정책

과 발전과정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27조).

아동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교육·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지위, 장애 유무, 국적, 민족,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다하여 아동을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정책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아동의 권리와 아동정책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 및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날·어린이주간 및 아동권리주간) ①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②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아동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를 아동권리주간으로 한다.

제2장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아동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아동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지역별 아동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구역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아동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별 아동정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지역별 아동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아동정책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2. 위촉직 위원 :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아동권리

제14조(생명에 관한 권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명권 및 생존과 발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 실현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의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출생지역,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동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의사표현의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립이나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에 대한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및 자립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정규 교육 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집단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아동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아동이 폭력을 당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전문상담가의 조력을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상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아동의 성보호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심리적·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나 노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지원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필요한 복지의 지원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아동권리의 구현

제21조(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에 따른 한국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아동전담공무원) ① 아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관련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

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와 관련한 아동의 권리침해의 발굴하거나 아동의 권리침해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아동권리 보장·실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아동권리보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고, 보건복지부에 그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권리와 관련한 아동의 애로·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2. 아동권리와 관련된 제도의 발굴 및 개선
 3. 그 밖에 아동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⑦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구성·임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아동통합서비스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통합서비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통합서비스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아동통합서비스의 대상선정, 아동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 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21조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6.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7.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8.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제22조제6항 각호의 업무
9.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48조제6항 각호의 업무
10.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11.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아동권리 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제27조(아동친화적 사회환경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안전 및 권리가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기준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가정에서 성장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체계와 재원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실종아동의 보호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0조(교육기관장의 의무) 「유아교육법」 제2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기관의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31조(아동단체 활동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권리침해에 대한 자율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아동단체는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아동권리침해의 신고 등) 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구

축된 아동통합서비스지원단,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 침해의 신고를 받은 아동통합서비스지원단장, 경찰청장 또는 지역경찰청장은 아동권리침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아동 권리침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아동권리침해신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진정) ①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4조(아동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아동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구성·운영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12조에 따른 아동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아동전담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임용된 아동전담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아동권리보장원의 경과규정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

제6조(아동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운영된 아동위원회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위원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조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기본법」으로 한다.

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를 “「아동기본법」 제3조제2호”으로 한다.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10조”를 “「아동기본법」 제12조”로 한다.

④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을 “「아동기본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아동기본법」 제12조제3항제2호”으로 한다.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를 “「아동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기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제10조제2항제24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를 “「아동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4호 중 “「아동복지법」 제37조”를 “「아동기본법」 제25조”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을 “아동통합서비스지원단”으로 한다.

⑦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